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4693

제안연월일: 2012. 2. 27.

제 안 자:국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및 제안경위

- 가. 신설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현재 원자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을 소관으로 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 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국회 인사청문 대상을 현행 57인에서 확대하여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공직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 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은 2011. 6. 17.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 확대는 국회의장자문기구인 '의정활동지원강화 자문위원회(2010. 11. 3. 구성)'에서 개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서, 이를 의안처리개선 6인소위원회(이명규 위원, 김세연 위원, 이두아 위원, 노영민 위원, 박우순 위원, 안규백 위원)에서 논의한 바 있음.
- 다. 의안처리개선 6인소위원회에서는 원자력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을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결정

하고, 주요 공직에 대한 국회의 인사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 공직자를 확대하는 의견을 채택함.

라. 6인소위원회 의견에 대하여 각 교섭단체에서 소속의원들로부터 의견 수렴이 있었고, 교섭단체대표의원(황우여 의원, 김진표 의원) 및 교섭단체수석부대표(이명규 의원, 노영민 의원)간 협의가 있었으며,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2. 10.)에서 이를 논의한 바 있음.

2. 주요내용

- 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추가함 (안 제37조제1항제8호다목 신설).
- 나.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를 추가함(안 제65조의2 제2항제1호).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8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65조의2조제2항제1호 중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 청장 또는 합동참모의장"을 "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 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	
과 같다.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교육과학기술위원회	8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u><신 설></u>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u>속하는 사항</u>
9. ~ 16. (생 략)	9. ~ 1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第65條의2(人事聽聞會) ① (생	第65條의2(人事聽聞會)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②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	
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는 헌	1
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	
송통신위원회 위원장· <u>국가정</u>	<u>국가정</u>
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	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

현 행	개 정 안
장・경찰청장 또는 합동참모	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
<u>의장</u> 의 후보자	인권위원회 위원장·국세청
	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
	동참모의장 또는 한국은행 총
	<u> 게</u>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